

## ATP (유럽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1. 개요

<p>■ 정의</p>	<p>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Perishable Foodstuffs and on the Special Equipment to be Used for Such Carriage (ATP) (부패성음식수송 및 관련수송용 특정 기기에 관한 협정)</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P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으나, 운송되는 해당 국가 자체의 강제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음.</li> <li>- ATP는 기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패성 음식의 국제 수송 및 수송 기간 동안 부패성 음식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ATP는 적어도 두 국가 간에 도로, 해상, 철도 등을 통해 운송되는 부패성 음식에 적용됨.</li> <li>- ATP 주로 수송되는 다양한 부패성 음식에 대해 알맞은 온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도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장비 및 이를 검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li> <li>- 운송 장비에 대해서는 ATP 규정 규격에 따라 시험 후, ATP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 href="http://www.unece.org/trans/main/welcwp11.html">http://www.unece.org/trans/main/welcwp11.html</a></li> <li>- 각국의 ATP 인증기관 <a href="http://www.unece.org/trans/main/wp11/teststations.pdf">http://www.unece.org/trans/main/wp11/teststations.pdf</a></li> </ul>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 냉장기계가 부착된 운송수단</li> </ul>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li> </ul>

■ 적용규격	- ECE/TRANS/165
■ 기타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는 자율인증이나,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ATP인증서를 보유하거나 ATP plate를 표시하는 것이 강제된다.

## 2. 인증배경

ATP는 1947년 조직된 UNECE(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 1970년 9월 1일 제네바에서 정한 협정문이다. 이는 1976년 11월 21일부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ATP 협정문에서 특정 부패성 음식의 국제적 수송에 관한 규칙 및 규격을 발표하였으며, 협정 동의 기관간의 공통된 국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패성 음식의 국제 수송시의 품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ATP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으나, 회원국 중, ATP규정을 자국의 국가 규정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있다. 협정문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unece.org/trans/main/wp11/teststations.pdf>

## 3. 인증기관

UNECE는 유럽 안팎의 국제적 협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범과 규격을 결정하고 협정을 체결하며, ATP 인증대상이 되는 품목을 결정한다. 또한 회원국의 수송 장비의 인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는 41개 회원국이 존재한다.

<http://www.unece.org/trans/main/wp11/treaty.html>

## 4. 인증품목

절연 벽에 설치되어 케이스 안팎의 열전달을 막는 장비(Insulated Equipment)로 일반 절연 장비(normally insulated; IN)과 특절연장비(Heavily insulated; IR)로 나뉜다.

특절연장비(IR)은 유럽에서 강제인증의 대상이 된다.

종류	K Coeff W/m <sup>2</sup> /°C	온도 °C	분류
Normal insulated	<0.7	N/A	IN
Heavy insulated	<0.4	N/A	IR
Mechanically Refrigerated Normal insulated	0.7-0.4	0 to +12	FNA
Mechanically Refrigerated Heavy insulated	<0.4	-20 to +12	FRC

## 5. 인증절차

영국의 경우, ATP 인증은 승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단일테스트(one-off test)나 형식승인의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 단일테스트의 경우, 샘플은 승인받은 시험 챔버에 운반되어 인증등급에 해당하는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경우, 협정서의 부속서1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법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형식승인):

GV235 form / ATP형식승인 관련 도면 / K-계수 측정결과를 포함하는 ATP 시험성적서 / 지정 냉동단위 열량계 시험 성적서 / 공장검사 / 지정 품질관리 담당자의 사인이 기재된 GV237 form

## 6. Contact(ATP)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Transport Division

Palais des Nations

CH - 1211 Geneva 10 Switzerland

- 홈페이지: <http://www.unece.org/trans/main/welcwp11.html>

- email: [infotransport@unece.org](mailto:infotransport@unece.org)

- Fax: +41 (0) 22 917 0039